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334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)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4 (2009.1.2)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8(2011.4.28)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6(2011.10.27.)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62호(2014.7.17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-159(2012.11.8)호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-60(2014.4.24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길음2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,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26일

성 북 구 청 장 인

길음2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(안)

1. 공람기간 : 2015.3.26 ~ 2015.4.09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2241-2854)
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945-0509)
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4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
 - 가. 사업명칭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나. 위 치 :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
 - 다. 시행면적 : 104,979.30㎡
 - 라. 시 행 자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(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6 상가동 401호 (하월곡동, 광남캐스빌아파트))

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바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9층, 24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2,3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사. 변경내용 :

- 2014.4.24. 관리처분인가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반영한 자금계획 변경
- 평형변경(대형→중·소형)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
- 사업기간 변경(사업시행변경일로부터 60개월) 등

5. 기타사항 :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(조합원)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및 길음2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